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입학 정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목 차

I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p.1
II . 전형일정 및 주요사항	p.1
III . 세부 전형별 안내	p.4
○ 재외국민 특별전형	p.4
○ 외국인 특별전형	p.11
IV . 유의사항	p.18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18
○ 전형 관련 유의사항	p.19
○ 발표 및 등록 유의사항	p.20
○ 정시모집 복수지원 제한	p.20
○ 이중등록 금지	p.21
○ 기타사항	p.21
V . 문의처	p.21
VI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및 재외 한국학교 현황	p.22
VII .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례 안내	p.23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교정	모집단위		모집인원	
			재외국민 (2% 이내)	외국인
성신	인문계열	신학과	2명	제한없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모집합니다.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의 제한 없이 모집합니다.

II. 전형일정 및 주요사항

1.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7.1.4.(월) 10:00 ~ 2027.1.7.(목) 17:00까지	• 성신교정 교학팀 방문접수
서류제출	직접방문	~ 2027.1.7.(목) 17:00까지	• 성신교정 교학팀으로 방문제출
면접고사	신학과	2027.1.12.(화) 10:00 ~	• 고사장소 : 성신교정 진리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합격자 발표	2027.2.5.(금) 16:00 (예정)	• 합격자 확인 : 성신교정 입학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합격자 등록	2027.2.10.(수) ~ 2.12.(금) 16:00까지	• 등록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등록안내문 참조 •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 **[서류제출 원칙 안내]**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1) 해당 발급기관 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원본 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거나,
2) 해당 교정에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사본 제출자는 등록 후 2027. 2. 19.(금)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성신교정(신학과) 지원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96-12,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학본부 1층 교학팀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 방법

- 입학원서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https://songsin.catholic.ac.kr>)에서 내려받습니다.
- 원서접수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학팀에 방문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입학원서 접수 오류 등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접수 시 전형 유형과 모집단위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실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다른 경우, 변경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는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성신교정(신학과) : 02-740-9877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연락처 오기, 타인 연락처 기재,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가. 전형료

전형명	전형료
재외국민 특별전형	130,000원
외국인특별전형	130,000원

나. 전형료 환불

(1) 전형료 전액 환불(접수 수수료 제외)

- 지원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천재지변, 질병 등)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지원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사전 공지 없이 전형일을 변경한 경우 등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전형료 반환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7. 4. 30.(금)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전 모집단위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전형 만점기준 5% 감점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전형 만점기준 20% 감점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전형 만점기준 30% 감점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부적격
제9호 (퇴학처분)	

- ※ 국내고 재학 사실이 있는 경우(재외국민, 외국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추가 제출해야 함
- ※ 복수의 학교폭력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가장 상위 조치 기준을 적용함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조치사항의 경우 미반영함
- ※ 학교폭력 관련 허위 신고 및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입학에 취소할 수 있음
-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일 기준일의 기재내용을 반영. 단, 작성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음

Ⅲ. 세부 전형별 안내

재외국민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군	모집단위	모집인원
가군	신학과	2
계		2

2. 지원자격 : 아래 <<공통 지원자격>>과 <<요소별 자격기준>> 동시 충족자

<<공통 지원자격>>

(1)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까지 고교 졸업이 가능한 자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2)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 간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3) 해외 근무자^①의 자녀^②

* 용어 해설

① 해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② 해외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요소별 자격기준>>

요소	자격기준	인정기준
해외 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재학기간 인정 기준 case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case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 근무/사업 /영업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 해외 근무/사업/영업기간 인정 기준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 체류하며 근무/사업/영업한 기간
해외 체류기간	학생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체류기간 인정 기준 case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방학을 포함하여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case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방학을 포함하여 학생 본인은 3/4,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은 273일, 부모는 243일

《보호자 해외 근무/사업/영업기간에 따른 지원자격 유형》

구분	세부 설명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 해외 근무 공무원의 범위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 근무 상사직원 자녀	•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 • 해외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③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 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④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⑤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 외국정부, 국제기구의 범위 ①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②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 현지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현지 자영업자 자격으로 지원해야 함
현지 자영업자 자녀	•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 현지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현지 자영업자 자격으로 지원해야 함

**기타 재외국민
자녀**

-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해외로 파견된 선교사(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발적 선교는 불가)의 자녀
- 외국유학연수자(재직증명서 등 제출)의 자녀

※ 해외 근무/사업/영업 중에 부, 모가 해당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전 지원자격 요건과 변경된 지원자격 요건을 합산하여 부모와 학생 모두가 근무/재학/체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에 해외 근무자 근무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시) 현지법인 근무자(2023.8.1.~2025.7.31.) + 현지 자영업자(2025.8.1.~2026.7.31.)

☞ 현지법인 근무자(2023.8.1.~2025.7.31.) + 현지 자영업자(2025.8.1.~2026.7.31.) 서류를 모두 제출

3.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한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사회교육기관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단, 부모가 근무(거주)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하였을 경우에는 「제3국 수학사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되, 인정여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함. 제3국 수학사유서는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함

(2)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 13학년제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12학년제 교육과정으로 환산하여 지원자격을 심사함

구분	국내 교육과정	13학년제	비고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Year 2 ~ Year 7	• 13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Year 13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완료하여야 고교 졸업으로 인정함 • 13학년제 교육과정의 Year 2~13을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국내 교육과정의 1~12학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중학교	7학년 ~ 9학년	Year 8 ~ Year 10	
고등학교	10학년 ~ 12학년	Year 11 ~ Year 13	

(3) 재학기간 인정기준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중복학기>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 학기 판단 예>

예시)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외국학교 재학기간>

- 각 학기를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해야 함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재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재학기간 산정 시, 1년 2학기제인 국가의 경우 6개 학기, 1년 3학기제인 경우 9개 학기, 1년 4학기제인 경우 12개 학기를 의미함

(4) 자격인정 기준시점 및 입학 허용기간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7년 2월 28일로 함
- 해당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가 1개월 늦는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5) 지원자격 유형 분류기준

-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 변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하고 지원자격 기간 동안의 모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코로나-19’등 관련 재외국민의 휴교·휴업 기간 인정

가. 대상 :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휴교, 해외 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 휴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간 : 학교(학생)의 휴교 기간 및 직장(해외 근무자)의 휴업 기간 등

다. 적용가능 범위

- 휴교 등 기간: 학생 재학 기간 및 체류 기간, 해외 근무자와 해외 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 기간

- 휴업 등 기간: 해외 근무자 재직 기간

※ 소명자료[공적증명서(학교장/교육부 발급, 공문 등)] 제출 필요

※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면접고사
신학과	일괄합산	100%

나. 면접고사

모집단위	일정	평가내용
신학과	2027. 1. 12.(화) 10:00~	전공수학능력, 인성 및 가치관,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평가함

※ 고사장소 : 성신교정 진리관

5.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 (1) 모집인원을 전형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2)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미리 발표한 예비합격자 순으로 선발함
- (3)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원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4) 동점자는 아래의 기준대로 처리함.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모집단위	구분	동점자 처리 순서
신학과	일괄합산	① 면접고사 전공수학능력 항목 성적 우수자 ② 면접고사 인성 및 가치관 항목 성적 우수자 ③ 외국 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자

6. 전형일정 : 1쪽 참조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요강 게시일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반드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함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 목록표의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2	입학원서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3	학력조회동의서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4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초·중·고 전체)	- 재학 당시 기간 동안의 학사일정표 제출해야 함 -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가능 - 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표기 필수 - 매학기별 시작일 및 종료일 표시 필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5	초·중·고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전입(입학)일, 전출(졸업)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초·중·고 성적증명서,	초등학교 성적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재학증명서에 학년·학기별 재학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7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졸업(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 시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8	가족관계증명서(일반) (학생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부모 이혼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사망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본인 입양 사실 있을 시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9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부)	- 정부24(https://www.gov.kr/) 발행 - 조회기간(부, 모, 학생 모두 해당) : 학생 중학교(7학년) 입학 일자부터 현재까지
10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부, 모, 학생 각 1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38호의 2 서식
11	여권 사본(부, 모, 학생 각 1부)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12	재외국민등록등본(부, 모, 학생 각 1부)	- 재외동포365민원포털(https://g4k.go.kr/)에서 온라인 발급 -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을 경우 :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본교 소정양식) 및 해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3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소속부서, 직위, 파견국가명, 파견기간이 명시 필수 • 본사 발급분만 인정 • 현지 자영업자의 경우 발급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14	지원자격 유형별 추가서류	
	○ 해외 근무 상사직원 자녀 :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 사본 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사본	• 국내 은행권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 자녀의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함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보호자의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사실 증빙서류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①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 법인세 납부 증명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예 :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가) :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본교 소정양식) 및 보호자 세금납부증명서 제출
	○ 현지 자영업자 자녀 : ①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 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 세금납부증명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예 :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가) :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본교 소정양식)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15	○ 기타 재외국민 자녀 : ① 해당 종교단체의 국내 법인등록증 사본 ② 해당 종교단체장이 발급한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선교국 및 파견 기간 명시)	• 법인등록증 : 해당 종교단체 원본대조필 확인 • 파견사실 확인서 : 선교국 및 파견기간 명시 필수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 (증빙자료 포함)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해당자에 한해 작성 후 제출(코로나 19 또는 전쟁으로 인한 경우 포함)
	제3국 수학사유서(증빙자료 포함)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해당자에 한해 작성 후 제출(코로나 19 또는 전쟁으로 인한 경우 포함)
	세례성사증명서	• 세례성사증명서 1부
18	추천인확인서	• 교구성직지망자 - 소속 교구 성소국에서 제출 • 수도자/일반지원자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나. 제출방법 : 1쪽 참조

8. 원서접수 방법 : 2쪽 참조

외국인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제한없음

2. 지원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중 하나와 <<어학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대 상	자 격 요 건	학 력 기 준
①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복수국적자, 무국적자 제외)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일본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7년 3월)까지 고교 졸업이 가능한 자
②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까지 고교 졸업이 가능한 자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어학기준	아래 어학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제외)
	<한국어> - TOPIK 3급 이상 - 본교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취득자 - 위 1 또는 2에 상응하는 어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교가 정하는 면접 평가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인정받은 자) ※ 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야 졸업 가능함

3.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①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이민이나 입양에 따른 외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지원자가 대한민국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국적취득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간주]
-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무관함(대한민국 소재 학교 출신 외국인 지원 가능), 단 국내 또는 국외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임을 공식 입증할 수 있어야 함(국내·외 인가사항이 없는 학교 출신자 지원자격 인정 불가)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②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해외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정식 신입학하여 1학기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이수한 경우만 인정함
 - ※ 1학년 1학기 중간편입, 국내 미취학 후 1학년 2학기 신입학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각 학기를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해야 함

<중복>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한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사회교육기관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격인정 기준시점 및 입학 허용기간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7년 2월 28일로 함
- 해당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가 1개월 늦는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4) 기타사항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면접고사
신학과	일괄합산	100%

나. 면접고사

모집단위	일정	평가내용
신학과	2027. 1. 12.(화) 10:00 ~	전공수학능력, 인성 및 가치관,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평가함

※ 고사장소 : 성신교정 진리관

5.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 (1)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함
- (2)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원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동점자는 아래의 기준대로 처리함.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모집단위	구분	동점자 처리 순서
신학과	일괄합산	① 면접고사 전공수학능력 항목 성적 우수자 ② 면접고사 인성 및 가치관 항목 성적 우수자 ③ 외국 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자

6. 전형일정 : 1쪽 참조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요강 게시일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학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 반드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함

①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 목록표의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2	입학원서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 [중국국적자의 경우] 호구부(원본 제출)와 친속관계증명서(해당국가 공증필) 모두 제출 • 부모의 이혼, 사망 등의 경우 별도서류 제출(친자관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추가 제출)

4	여권 사본(부, 모, 학생) 각 1부	•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5	부모 본국 신분증 사본 각 1부	•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6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하며 앞면, 뒷면 복사하여 제출
7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 시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졸업(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8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가능 • 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9	학력조회동의서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10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보유자에 한하여 제출
11	재정입증서류	• 본인 혹은 재정 보증인 명의의 KRW 20,000,000 상당 예금 잔고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단, 잔고증명서는 허가기간 동안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행된 경우 심사 시 시차를 두어 잔고 여부를 재확인 할 수 있음 • 중국 국내에서 발급한 경우 4대은행(중국,공산,건설,교통)에서 발급된 은행잔고증명서만 인증 함
12	세례성사증명서	• 세례성사증명서 1부
13	추천인확인서	• 교구성직지망자 - 소속 교구 성소국에서 제출 • 수도자/일반지원자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② 전 교육과정 이수자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 목록표의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2	입학원서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3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하며 제출 • 앞면, 뒷면 복사하여 제출
4	본인 본국 신분증 사본	• 별도 공증 필요 없음(해당국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복사하여 제출) • 외국인에 한하여 제출
5	여권 사본(학생)	•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6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 조회 기간 : 출생부터 현재까지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38호의 2 서식
8	초·중·고 재학증명서,	• 재학기간[전입(입학)일, 전출(졸업)일]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9	초·중·고 성적증명서,	• 초등학교 성적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단, 재학증명서에 학년·학기별 재학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0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최종합격 시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졸업(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11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재학 당시 기간 동안의 학사일정표 제출해야 함 •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가능 • 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 표기 필수 • 매학기별 시작일 및 종료일 표시 필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12	학력조회동의서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1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보유자에 한하여 제출
14	특이사항 발생 사유서 (증빙서류 포함)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코로나19 또는 전쟁으로 인한 경우 포함)
15	세례성사증명서	• 세례성사증명서 1부
16	추천인확인서	• 교구성직지망자 - 소속 교구 성소국에서 제출 • 수도자/일반지원자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③ 북한이탈주민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 목록표의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2	입학원서	•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에서 발급
4	지원자격 유형별 추가서류(학력관련서류)	
	학력인정증명서	• 북한고교 출신자 • 시·도교육청에서 발급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 국내고교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해외고교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출신자
5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시군구청에서 발급
6	세례성사증명서	• 세례성사증명서 1부
7	추천인확인서	• 교구성직지망자 - 소속 교구 성소국에서 제출 • 수도자/일반지원자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나. 제출방법 : 1쪽 참조

8. 원서접수 방법 : 2쪽 참조

IV. 유의사항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 원칙 안내]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 1) 해당 발급기관 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원본 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거나,
- 2) 해당 교정에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2027. 2. 19.(금)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합격 및 입학を 취소합니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요강 게시일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다. 재학/근무/거주 관련 서류는 지원자격 요건 충족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내학교 및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드시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는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또한,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있는 서류는 한국어(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제출 서류상의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서류 또는 번역 공증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전형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사.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에 따라 본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시점에 상관없이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이 미달될 경우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자격인정 기준시점을 2027년 2월 28일로 하는 합격자(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원본과 보호자의 근무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외국파견 교육·연수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졸업 직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7. 2. 19.(금)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전형 관련 유의사항

- 가.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제출한 지원서류의 조회(출입국사실조회, 학력조회 등)를 거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나. 소정의 절차 및 전형에 불응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전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다. 고사 당일에는 반드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혹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자국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태블릿PC, 녹음기 등 전자·통신장비 일체의 소지를 불허합니다. 또한, 고사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퇴장 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합니다.
- 라. 전형 기간 중의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곳의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불확실한 주소나 전화번호 기재로 인한 연락 두절 등에 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자,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위조,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합격 취소 또는 입학의 취소를 합니다. 또한,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바. 입학 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사. 모든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릅니다.

발표 및 등록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합격자 발표	2027. 2. 5.(금) 14:00 예정
발표 방법	성신교정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s://songsin.catholic.ac.kr)
합격자 등록	성신교정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에서 확인 후 합격자 등록
등록기간	2027. 2. 10.(수) ~ 2. 12.(금) 16:00까지
등록금 납부	추후「합격자 유의사항」을 통해 납부방법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반드시 지원자가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각종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성신교정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에서 확인바랍니다.

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합격자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입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등록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등록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합격자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등록 후 등록금 납부기간[2027. 2. 10.(수) ~ 2. 12.(금) 16:00]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 처리합니다.

라. 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는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다수의 대학에 문서등록 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교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불 신청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바. 등록 개시 후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한하여 미등록 충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시모집 복수지원 제한(재외국민 특별전형)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 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을 금지합니다.

다.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이중등록 금지

[공통]

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가. 정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에 반드시 1개 대학만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나.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이전에 등록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며, 수험생은 합격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회해야만 합니다.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합격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해야만 합니다.

나. 최종 합격 후 지원자가 서류제출 시기에 제출한 「학력조회동의서」를 바탕으로 학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력 조회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학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라.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연락합니다.

V. 문의처

모집단위	담당부서	전화	홈페이지
신학과	성신교정 교학팀	02-740-9877	https://songsin.catholic.ac.kr

VI.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및 재외 한국학교 현황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현황(2026.07.09.기준)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키르기스스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 :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 재외 한국학교 현황(2026.04.기준)

국가명	학교명
일본(4개교)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인터네셔널소중고등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13개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옌타이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대만(2개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타이베이한국학교
베트남(2개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2개교)	젯타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인도네시아(1개교)	자카르타한국학교
싱가포르(1개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1개교)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1개교)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1개교)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1개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1개교)	모스크바한국국제학교
이란(1개교)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1개교)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1개교)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1개교)	프놈펜한국국제학교

Ⅶ.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례 안내

case 1. 온전한 학기 이수

- 해외 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우측에 기재한 기간 외에는 해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 학사일정

G8(2021. 8. 1. ~ 2022. 6. 23.)
G9(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 재학기간

G8(2021. 8. 1. ~ 2022. 6. 23.)
G9(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발령일 기준)

2021. 8. 1. ~ 2024. 7. 31.

<질문 1>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1) 원칙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

☞ G8(2021. 8. 1. ~ 2022. 7. 31.), G9(2022. 8. 1. ~ 2023. 7. 31.), G10(2023. 8. 1. ~ 2024. 7. 31.)

2) 예외 : 상기 사안처럼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재학 기간으로 인정

☞ G8(2021. 8. 1. ~ 2022. 6. 23.), G9(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질문 2>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답변> 2021. 8. 1. ~ 2024. 7. 31.

<질문 3> 해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답변>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이 시작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365일) G8(2021. 8. 1. ~ 2022. 7. 31.), G9(2022. 8. 1. ~ 2023. 7. 31.), G10(2023. 8. 1. ~ 2024. 7. 31.)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273일 이상)을, 부모는 2/3 이상(243일 이상) 체류

※ 학생이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이수했더라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질문 4> 학생이 G10 학기 수료 후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답변> G10(2023. 8. 1. ~ 2024. 7. 31.)동안 해외 체류일수 3/4을 충족한 경우 충족

<질문 5> 해외 근무자의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답변> G10(2023. 8. 1. ~ 2024. 7. 31.)동안 해외체류일수 2/3를 충족한 경우 충족

<질문 6> 해외 근무자가 2024. 6. 26.(발령 종료일 :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답변> 미충족

☞ 해외 재직 기간이 3년(1,095일)을 충족하지 않음. 해외 근무자는 2024. 7. 31.까지 재직해야 함. G10(2023. 8. 1. ~ 2024. 7. 31.)동안 해외체류일수 2/3를 충족하더라도 지원 자격 미충족

case 2. G8 중간에 편입한 경우

- 해외 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우측에 기재한 기간 외에는 해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 학사일정

G8(2021. 8. 1. ~ 2022. 6. 23.)
G9(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 재학기간

G8(2021. 9. 1. ~ 2022. 6. 23.)
G9(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발령일 기준)

2021. 9. 1. ~ 2024. 8. 31.

<질문 1>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G8을 한 달 늦게 편입하였으므로, G11 한 달을 추가 재학해야 함**

☞ **G8(2021. 9. 1. ~ 2022. 6. 23.), G9(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4. 8. 31.)**

<질문 2>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답변> 2021. 9. 1. ~ 2024. 8. 31.

<질문 3> 해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답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 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

[기준일 1] (2021. 9. 1. ~ 2022. 8. 31.), (2022. 9. 1. ~ 2023. 8. 31.), (2023. 9. 1. ~ 2024. 8.31.)

[기준일 2] **G8(2021. 9. 1. ~ 2022. 7. 31.) + G11(2024. 8. 1. ~ 2024. 8. 31.)**, G9(2022. 8. 1. ~ 2023. 7. 31.), G10(2023. 8. 1. ~ 2024. 7. 31.)

☞ [기준일 1] 또는 [기준일 2] 중 학생, 해외 근무자 및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체류일수 산정

case 3. G10 중간에 편입한 경우

○ 학사일정

G10(2023. 8.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5. 6. 23.)
G12(2025. 8. 1. ~ 2026. 6. 23.)

○ 재학기간

G10(2023. 9.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5. 6. 23.)
G12(2025. 8. 1. ~ 2026. 6. 23.)

○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발령일 기준)

2023. 9. 1. ~ 2026. 8. 31.

<질문>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지원불가. 2026. 6. 23. 졸업이므로 부족한 한 달을 채울 수 없으므로 재학기간 미충족

G10(2023. 9.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5. 6. 23.), G12(2025. 8. 1. ~ 2026. 6. 23.)